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06.23(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 2011년 06월 03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06월 08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06월 17일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구명희)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특별휴가 내용을 조정 및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의 중복된 사항 삭제
 - 근무기강 확립, 복장 등,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겸직허가 등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문구 조정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15조제5항 단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조정 및 추가(제18조제6항, 부칙, 별표 5)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특별휴가의 한시적 적용 특례 마련
 -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사항 추가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왕년)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 “근무기강 확립, 복장 등, 근무시간 등,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공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겸직허가” 등 11개 조문 및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 대통령령 제22275호(2010.7.15.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907호(2011.4.28. 일부개정)

-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하여 “공직자의 행동률, 근검·절약, 신분증발급,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등 4개 조문 신설 및 그 밖의 일부 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현행 28개 조문을 21개 조문으로 정비한 것임.
-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중에서 “결혼(본인) 7일→5일, 출산(배우자) 3일→5일, 입양(본인) 14일→20일로 조정하고, 결혼(자녀) 1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을 추가하였으며,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상당이하 자녀의 학교(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학습시설)행사 참석 시 3일 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한 것으로, 동 조례안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조례안 제16조제3항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데 이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의 사유가 연가 일수에 포함되는 지?

아니면 제17조에 따른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례안 제16조제3항의 “지각” 과 제17조제1항의 “지참”이 그 의미가 서로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 조례안 제18조제6항의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에 대하여
 - 대상학교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된 학습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
 -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과 교원 등은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

※ 참고

□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시 특별휴가 조례 반영 전국현황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 ‘없음’
-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 ‘충청북도청(2010.11.5.) 반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요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6. 17. 박상필 교육의원

○ 수정요지 : 법문의 문구가 잘못 표기되어 바르게 수정하고, 같은 의미 인데 다르게 표기된 자구를 일치시켜 정리함.

○ 수정내용

- 안 제16조제3항의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을 “지참”으로 한다.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3항 중 “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각”을 “지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③ <u>질병이나 부상, 그 밖의</u> 사유로 인한 <u>지각·조퇴</u> 및 <u>외출</u> 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③ <u>질병이나 부상</u> 의 사유로 인한 <u>지참·조퇴</u> 및 <u>외출</u> 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지진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한 한시적 적용 특례)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종전규정(충청북도조례 제3271호)을 적용하되, 자녀 결혼·본인 입양·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별표 5를 따른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1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시기 및 방법(제2조제2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교육감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량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4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 5.23, 일부개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2010. 7.15, 일부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